

보도 일시	2022. 4. 12.(화) 배포시점	배포 일시	2022. 4. 12.(화)
담당 부서	이용자정책국 인터넷이용자정책과	책임자	과 장 최윤정 (02-2110-1520)
		담당자	주무관 백승재 (02-2110-1528)

위치정보사업 등록제 시행을 위한 위치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진입규제 완화 및 정기실태점검 등 사후관리절차 구체화로
위치정보산업 활성화와 위치정보의 안전한 이용 기대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4월 12일 열린 제17회 국무회의에서 지난해 10월 개정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의 시행(‘22.4.20. 예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한 위치정보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위치정보사업의 진입규제를 등록제로 완화하고 위치정보 보호의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위치정보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등록 및 실태점검 절차와 과징금·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구체화하였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위치정보 사업의 등록·변경등록 신청, 양수·합병 등 인가 신청 등에 관한 사항, 등록·인가의 사업계획서 및 세부심사기준을 개정하였다.

둘째, 위치정보 보호조치를 위반한 사업자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위반 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을 위반행위와 관련한 서비스 매출액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으로 하고, 과태료 가중·감경 사유를 구체화하는 등 과징금·과태료 부과기준을 명확히 하고, 시정명령 공표 등의 절차를 마련하였다.

셋째, 위치정보법에서 위치정보사업의 등록 등의 사항에 대해 방통위의 정기 실태점검 의무를 규정함에 따라 등록 실태 점검사항을 구체화하고, 조사방법, 점검계획의 통보 등 점검 절차를 마련하였다.

한상혁 위원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 의결로 위치정보사업 진입규제 완화와 함께 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사후관리절차가 구체화되어 위치정보 산업의 활성화와 보다 안전한 이용이 기대된다.” 고 밝혔다.

붙임.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야 한다.

<신 설>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생략)

<신 설>

제3조(개인위치정보사업의 허가 시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은 별표 2

-----.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첨부서류가 미비되어 있는 등의 흠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의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제5항에 따른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⑤ -----
---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신청서-----
----- 등록 여부-----
통보해야 -----.

-----.

⑥ (현행과 같음)

⑦ 방송통신위원회가 법 제5조 제5항에 따라 등록에 조건을 붙이려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조(개인위치정보사업의 등록 요건별 세부심사기준) ① ----

----- 등록
요건별 -----

와 같다.

② (생략)

제4조(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서의 발급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업을 허가하거나 법 제5조제7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인위치정보사업허가대장에 기재한 후 개인위치정보사업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허가번호 및 허가연월일
2. ~ 6. (생략)
7. 허가조건

②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개인위치정보사업자”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허가서를 잃어버렸거나 허가서가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5조(개인위치정보사업의 변경 허가 등) ① 삭제
② 법 제5조제7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개인위치정보사업

-----.

② (현행과 같음)

제5조(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증의 발급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증을 발급하는 -----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대장----- 발급해야 -----.

1. 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2. ~ 6. (현행과 같음)
7. 등록조건

② ----- 등록을 한 자(이하 “개인위치정보사업자”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한 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등록증이 -----.

제4조(개인위치정보사업의 변경 등록 등) ② 법 제5조제2항----- 변경등록을 하려는 ----- 개인위치정보사업

한다)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사물위치정보사업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 중 변경되는 부분(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수준이 신고한 때보다 저하되는 위치정보시스템 변경의 경우에 한정한다)

- 2. (생략)
- ③ (생략)

제6조(개인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신청 방법 및 절차) ① ~ ③ (생략)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양수 또는 합병·분할의 인가신청에 대하여 인가를 한 경우에는 개인위치정보사업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개인위치정보사업의 휴업·폐업 승인 등) ① 법 제8조제

----- 경우에는 -----

----- 제출해야 -----.

1. -----
----- 변경(위치정보시스템 중 서버 등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한정한다)되는 부분

- 2. (현행과 같음)
- ③ (현행과 같음)

제6조(개인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신청 방법 및 절차)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증을 발급해야 -----
--.

제7조(개인위치정보사업의 휴업·폐업 승인 등) ① -----

1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 1호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휴업 또는 폐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개인위치정보 사업휴업·폐업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2. (생략)

<신설>

② (생략)

제9조(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① (생략)

②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변경 신고를 하려는 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 중 변경되는 부분(개인위

----- 제출해야 -----
-----.

1.·2. (현행과 같음)

3.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개인 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 사실 확인자료의 파기를 증명하는 서류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 -----

----- 제출해야 -----.

1. -----
----- 변경(위치정보시스템 중

치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수준이 신고한 때보다 저하되는 위치정보시스템 변경의 경우에 한정한다)

2. (생략)

③ (생략)

제12조(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휴업·폐업의 신고) ① 법 제11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휴업·폐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2. (생략)

<신설>

② (생략)

제14조(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

① (생략)

서버 등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한정한다)되는 부분

2.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휴업·폐업의 신고) ① -----

----- 제출해야 -----.

1.·2. (현행과 같음)

3. 법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개인위치정보나 같은 조 제2

항 후단에 따른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의 파기를 증명하는

서류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인가의 취소, 사업의 폐지 또는 사업의 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15조(과징금의 부과기준) < 신설 >

② -----
--- 등록 -----

-- 고시해야 -----.

제15조(과징금의 부과기준) ①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은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해당사업연도”라 한다)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위반행위와 관련한 서비스 매출액(이하 “위반행위관련매출액”이라 한다)을 연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사업연도 첫날 현재 위반행위와 관련한 서비스를 개시한 지 3년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서비스 개시일부터 해당사업연도 말일까지의 위반행위관련매출액을 연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위반행위관련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위반행위일까지, 해당사업연도에 위반행위와 관련한 서비스를 개시한 경우에는 그 서비스 개시일부터

① 법 제14조제1항에서 “위치정보사업 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 매출액”이란 해당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이하 “위치정보사업자등”이라 한다)의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업연도(이하 “해당 사업연도”라 한다)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 초일 현재 사업을 개시한지 3년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개시 후 해당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며,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위반행위일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신 설>

위반행위일까지의 위반행위관련매출액을 해당사업연도의 위반행위관련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위치정보사업 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 매출액”은 해당사업연도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사업연도 첫날 현재 사업을 개시한 지 3년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해당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하며, 해당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위반행위일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
--.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및

<신 설>

제16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절차)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 14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 부과금액,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징금

제2항에 따른 매출액 산정을 위하여 재무제표 등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치정보사업자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법 제1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영업을 개시하지 않았거나
영업을 중단하는 등의 사유로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2. 위반기간이나 관련 매출액의
범위를 확정할 수 없어 매출
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3. 재해 등으로 매출액 산정자
료가 소멸되거나 훼손되는 등
객관적인 매출액 산정이 곤란
한 경우

제16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절차) ① ----- 법 제 14조제1항 및 제2항-----

부과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7조(과징금의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자등이 납부하여야 할 과징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 인정하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자연재해 또는 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있는 경우
3.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②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하려는 자는 그

----- 통지해야 -----
--.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과징금의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① <삭 제>

<삭 제>

납부기한의 10일 전까지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⑤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위치정보사업자들의 담보제공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세무서장”은 “방송통신위원회”로 본다.

제18조(가산금)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가산금은 체납된 과징금액에 연 100분의 6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19조(과징금의 독촉) ①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독촉은 납부기한 경과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부하는 경우 체납된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발부일부부터 10일 이내

③·④ (현행과 같음)

⑤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이나 분할 납부를 위한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이하 “위치정보사업자등”이라 한다)-----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후단 삭제>

<삭 제>

<삭 제>

로 한다.

제20조(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① (생략)
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술적 조치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략)
2. 위치정보시스템에의 권한 없는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암호화·방화벽 설치 등의 조치

3.·4. (생략)

<신설>

<신설>

③ (생략)

제21조(위치정보 보호조치 등의 점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내용과 기록의 보존실태를 점검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 3일 전까지 그 위치정보사업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

제20조(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현행과 같음)
2. ----- 권한 없는 방화벽 -----

3.·4. (현행과 같음)

5. 위치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이나 이에 상응하는 조치

6. 그 밖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적 조치

③ (현행과 같음)

제21조(위치정보 보호조치 등의 점검) -----

-- 7일 -----
----- 통보해야 -----.

만, 개인위치정보의 침해 사고가 발생하거나 개인위치정보의 침해에 대한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된 경우로서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4. (생략)

<신설>

<신설>

제기되어 긴급히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1. ~ 4. (현행과 같음)

제25조의2(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의 공개) 법 제21조의2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통보에 관한 사항
2.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보호의무자의 권리·의무와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3. 위치정보관리책임자의 성명, 전화번호 등 연락처나 개인위치정보의 보호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 전화번호 등 연락처

제26조의2(개인위치정보의 파기 등) ① 법 제23조제1항 본문 및 제24조제4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의 파기에 관

하여는 제8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는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로 본다.

②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위치정보의 보유에 관하여 별도로 동의한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를 보유할 수 있는 기간은 개인위치정보주체가 동의한 때부터 최대 1년까지로 한다.

④ 방송통신위원회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개인위치정보의 파기실태를 점검하게 하려는 경우 점검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21조를 준용한다.

제26조의2 (생략)

<신설>

제26조의3 (현행 제26조의2와 같음)

제33조의2(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의 설립인가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가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

른 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이하 이 조에서 “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라 한다)의 설립을 인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방송통신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② 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는 위치정보산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위치정보산업에 관한 연구 및 제도 개선의 건의
2. 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자율 규제에 관한 연구 및 지원
3. 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인력 양성 지원
4. 위치정보산업 관련 현황 조사 및 통계 작성
5. 위치정보산업에 관한 기술동향 조사 및 신기술 보급 활동
6. 위치정보산업에 관한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7. 위치정보 보호에 필요한 기술 연구
8.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개인 위치정보 제공의 지원
9. 그 밖에 위치정보산업의 발전과 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의

<신 설>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위치
정보산업협회의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국위치정
보산업협회에 다음 각 호의 자
료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서 또는 사업실적서
2. 예산서 또는 결산보고서
3. 제2항 각 호의 사업 수행과
관련된 자료

제35조(실태 정기점검) ① 방송통
신위원회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실시하는 실태 정기점검에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
어야 한다.

1. 개인위치정보사업자의 상호,
주된 사무소 소재지나 위치정
보시스템의 변경 여부
2.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결격
사유 발생 여부
3. 사업의 양도·양수, 상속 또
는 합병·분할 여부와 그 통
지 여부
4.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휴
업·폐업 여부
5. 이용약관 및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과 그 공개 현황

6.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위치 정보의 관리적·기술적 조치 현황

7.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의 보관·파기 현황

② 제1항에 따른 실태 정기점검은 서면조사,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효율적인 실태 정기점검을 위하여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③ 방송통신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실태 정기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점검의 목적·대상·방법·기간 등을 포함한 점검계획을 점검 시작 7일 전까지 점검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개인위치정보의 침해사고가 발생하거나 개인위치정보의 침해에 관한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되어 긴급히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제36조(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① 방송통신위원

<신 설>

<신 설>

회가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표의 내용·횟수·매체와 지면의 크기 등을 정하여 명해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할 때에는 그 공표 대상자에게 미리 그 문안(文案) 등에 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7조(시정조치를 명한 사실의 공개)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한 사실을 공개할 수 있다.

1의2. ~ 7. (생략)

8. 법 제13조에 따른 허가 취소,
사업 정지 등에 관한 사무

9. ~ 12. (생략)

② (생략)

제39조(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
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
인으로 제2조제2항, 제5조제2항
· 제4항, 제5조의2, 제6조제1항
· 제2항, 제6조의3, 제7조제1항,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
여야 하는 첨부서류를 같음하
여야 한다.

1의2. ~ 7. (현행과 같음)

8. ----- 등록 취소-----

9. ~ 1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39조(행정정보의 공동이용) --

----- 제4조제2항
· 제4항-----

----- 제출해
야 ----- 같음해야
-----.